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10.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2. 회의방식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손 병 두 부위원장 0] 성 위 원 호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원 위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14차부터 제17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부터 제18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0년도 제14차부터 제17차 금융위 회의록, 제3차부터 제5차 금융위 서면회의 회의록과 2020년도 제15차부터 제18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35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354호 『키움증권㈜의 (가칭)키움에프앤아이㈜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키움증권㈜이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회사설립 및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가칭)키움에프앤아이㈜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5호 『지알에스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알에스투자자문㈜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월,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요구를 조치 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6호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취득시 승인절차를 미이행하고,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모놀리스자산 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업무상 횡령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前대표이사 ○○○씨는 본인이 법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실질적 감독자로 보 아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과거에도 이런 식 으로 책임을 물어왔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보고자) 前대표이사 ○○○는 20××년 ×월에 대표이사 취임을 하였고,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20××년 ×월××일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선임 무효판단을 받았음. 검사를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전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출근해서 경영상의 결정들을 실질적으로다 수행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20××년 ×월××일 이후인 ×월에도 타 회사에 CB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결정한 결재서류도 확인을 했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결정을 하였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7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재제출 명령(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경영개선명령 조치('20.7.22.)에 의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반하여 2명의 대표이사가 각각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미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제출을 명령하는 내용
- (위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보면 금년 ××월까지 유상증자를 한다고 되어 있음. 만약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제출했는데 유상증자를 하지 않 았다면 그때는 이미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미이행하 는 것이 됨. 이때는 경영개선계획을 재제출하라고 할 필요 없이 경영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만약 12월까지 제출했는데 그때도 그 증자의 구체 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조치할 예정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8호 **『공인회계사 ㅇㅇㅇ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 ㅇㅇㅇ가 직무정지기간 중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재차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하지 않았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진단취소 및 진단서를 회수하여 직무수행이 미수에 그쳤음. 과거 1년의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음. 그 후에 직무정지기간 중에 감사반도 다 탈퇴를 하고 전문진단기관에서 탈퇴해서 위법사유를 스스로 해결했음. 지난 35년간 개인개업회계사로 직원 3명과 함께 기장 및 세무조정업무를해 오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앞으로 저와 저희 직원이 기장 및 세무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림. 한편 당연직 징계위원 중에서 한공회의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기피신청도 했음. 존경하는위원장님, 위원님, 부디 저의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을부탁드림. 또한 가지 의견은 과연 이런 조치가 합당한가, 저는 금융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한공회 회장과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재량권남용처분에 대해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임.

▷ 진술인이 퇴장함

(위원) 진술인이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진술인이 진단서가 취소가 됐다고 했는데 6건 중에 3건은 날인하고 이미 관공서에 제출이 끝났고, 나머지 3건도 도장을 찍고 보고서로써 완결해서 제출했는데 해당 구청공무원이 3개 보고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보고 싶다고하자 자신의 진단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발행을 취소했다고 함.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이미 회계사로서 도장을 찍고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그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고사후적으로 취소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음. 아울러 6건 중에단 1건의 이런 보고서 발행이 있더라도 저희로서는 직무정지 2년과 부수조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위원) 한공회 상근부회장 제척요구 내용과 한공회에서 의결 했던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한공회 상근부회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상근부회장은 감리조사 및 윤리조치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본 건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그때 참석한 위원님들이 공인회계사 그룹에도 굉장히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 업(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사례라고 하여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던 내용임.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협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신협의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 (위원) 신협은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을 잘 챙겨주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광역화로 끌고 가려 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음. 물론 개별금융회사 입장 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또는 서민들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지역을 확대하더라 도 지역금융, 관계금융에 대한 노력과 배려는 계속 되었으 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음.
 - (보고자) 당초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조합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유대구역을 확대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지역금융 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이 많이 약화될 수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대출구역에 대한 확대는 그동안 수신은 많이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여신은 많이 안 나간다는 신협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 첫 번째임. 두 번째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이미 9개의 구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60호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경남)율곡농업협동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3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장 이라는 직책과 책임에 대해 사실을 설명 드리고 행위자가 아닌 관리책임자,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오니 부디 이해와 관용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람. 먼저 농업협동 조합장은 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금융전문가가 아닌 농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함. 율곡농협은 직 원 20여명으로 운영되는 조그마한 면단위 농촌농협으로 대 출금 약 770억 원이라는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 판매사 업, 구매사업, 지도사업 등을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농 촌농협임.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금융기관 수준의 직원 업무 역량이나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음. 농협 상임조합장은 현직 직원이 아닌 선출직으로서 경영전 반을 책임지는 자리임. 그래서 많은 급여와 비용을 들여 신 용사업은 상임이사나 신용상무,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전담 추진하고 있음. 물론 대출 추진시 조합장이 여러 가지 책임을 안지는 것은 아님. 첫째, 조합장의 기본은 채권보전 에 염두를 두고 있음. 그래서 조합장은 이러한 결과가 이루 어지면 여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

해서 대출을 실행하라고 하는 등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음. 조합장 재직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출 관련 채무자와는 직접 상담 및 대화를 나눈 적도 없음. 특히, 금번 지적된 대 출 관련 채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임. 그런데 어찌 제가 동일인 대출한도와 관련해서 위반 여부를 알 수 있겠 는지? 저는 지난 3주간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감사기간 동안 검사반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에 대한 위반사항 을 들은 바가 없음. 보통 지적사항 관련 부분은 현장에서 관련자 진술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검 사에서는 상임이사, 총괄상무, 신용상무 등 어느 누구도 검 사반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함. 이번 동 일인 한도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내부징계규정에 는 조합장을 행위자로 직시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 조 합감사위원회 징계 내용을 보면 조합장이 지시한 사실이 없 는 한 감독자로서의 책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합에 서 일어나는 수많은 직원들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위법사항 하나하나까지 조합장이 행위자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특히, 금융감독원 위임감사에 따른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아직 단 한 차례도 조합장을 행위자로 규정한 적이 없음을 확인 하였음. 행위자가 아닌 직원관리 책임으로 감독자의 책임은 달게 받겠음. 끝으로 전국 지역농협은 1,118개 농협이 있음. 이중 656개, 약 59% 농협은 자산규모가 2,5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농협임. 이들 농촌조합의 조합장은 신용사업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문외한 조합장들로서 이들을 행위자 로 본다면 모든 조합장이 범법자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

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살펴보아 주시기 부탁드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 1월31일 농협중앙회장 출마후보자 3위로 낙선하였음. 선거기간 중 금융감독원 감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음. 내용은 금융감독원 감사로 인해 불법대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이라 당선되어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등인터넷신문과 괴문서 찌라시 등 수없이 유포되어 아직도 그마음의 상처는 큰 바윗돌로 남아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이 농협중앙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이 검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였음. 상호금융에 대 해서는 사실 관할 부처가 있기 때문에 검사·감독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 검사 실시배경을 얘기해 주시기 바람. 두 번 째로 행위자를 감독자로 바꾸게 되면 징계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술인의 주장에 따르면 통상 조합장에 대해서는 행위자로 제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금감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행위자로 직결해 왔다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림.
- (보고자) 먼저 검사 실시배경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 통합 상시감시시스템(ADAMS)이라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이나 사고우려 조합에 대해서 적출되게 되어 있음. 거기에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 도 초과혐의 거래가 상당히 짙은 것으로 나와 검사를 하게 되었음. 두 번째, 행위자가 아닌 감독자로 할 경우 징계수위

는 문책경고에 해당됨. 참고로 상임조합장 시절에 상근임원이 자기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일어난 건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세 번째, 조합장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부분은 큰 조합에 대해서는 대출심사위원장을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있음. 그래서 대부분 상임이사한테 징계를 많이 하는데 상임이사가 없는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에 대해서도 징계한 사례가 있음.

- (위원) 상무이사도 있고 여신담당자도 있다고 했는데 전부 다 비상근이라는 것인지?
- (보고자) 상임이사 취임은 2018.1월이며 본 건 최고 위반행위는 2017.9월로 당시에는 상근임원이 조합장 밖에 없었고 대출에 대하여 조합장에게 전결권이 있었음. 여타 상무 등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지점장급 아니면 부장급 직원을이야기하는 것임.
- (위원) 누구한테 가는 돈인지도 다 알았다는 건지?
- (보고자) 그러함. 한 지역에서 33년을 했기 때문에 인근 차주나 이런 부분은 대출심사하려면 계속 내방을 해야 되고 전 직원이 대출거래처에 대해 나가려면 출장복명서에 결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일어나는 경위들을 충분히 보고 받았으며 이런 내용들을 검사시 직원들과 면담하면서 확인했음.
- (위원) 검사 시기가 언제인지?

- (보고자) 작년 8월임.
- (위원) 그때 진술인이 농협중앙회장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ㅇ (보고자)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고 상시감시시스템 적 출결과에 의해 나갔는데 검사현장에 가서 지금은 작고하셨 지만 상임이사가 "우리 조합장님은 큰 꿈을 갖고 계시다. 이번에 농협중앙회장에도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예를 갖춰서 검사에 임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임이사와 면담할 때 마다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였음. 다만, 조합장께서는 검사기 간 중에 해외출장을 갔기 때문에 검사착수 후 이틀, 검사종 료 직전 한 이틀 정도만 시간이 되었는데, 조합장과 이야기 할 때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을 설명하고 "정확한 위 반규모 등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검사의견서를 발부해드릴 테니까 그때 충분한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 내했고, 실제로 소명이 된 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 위반 내 역에서 다 제외하였음. 율곡농협 쪽에서 더 이상 소명 못하 는 부분을 가지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 사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림.
- (위원) 농협회장 선거가 1월31일인데?
- ㅇ (보고자)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

데 내부 심사과정 등을 거친 후 사전통지 등 제재절차가 최 근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었음.

- (위원) 직무정지 3월을 하더라도 조합장 결격사유 이런 것에 는 해당 안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농협은 면직처분에 해당하는 개선(改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됨.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61호 『㈜J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JB금융지주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브랜드사용 수수료 등을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62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하나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보고자) ㈜하나은행의 서면 의견진술에 대해 설명드림. ㈜ 하나은행은 중국의 감독당국이 기타유형 등록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즉, 중국 내 규제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등록을 못해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주장. 그리고 ㈜하나은행은 지분율이 25%에 불과하여 75%를 보유한 중국의 랑자고분유한공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록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과 언어적 측면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진술했음.
- (위원)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다른 지역에서 기타유형의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기타유형 이외의 증권유형 또는 지분유형 등 다른 사모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었음. 특히 ㈜하나은행은 출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의견을 개진해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위원) 보통은 금융회사가 취득을 하고 금융당국에 보고를 안 해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 사례는 보고는 했는데 보고한 내용대로 실행을 안 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출 자했느냐 하는 취지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증자명령을 했는데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감독당국은 "사정이 인정되니까 1년

동안의 기회를 줄 테니까 1년까지 해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임.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해됨.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금융회사를 도와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36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업권 법도 똑같이 금리나 과태료 대상을 바꾸었는데 그때 보면 그 회사의 이사, 감사 이렇게 했는데 보험회사는 특수하게 발기인이 왜 들어갔는지? 연역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 (보고자)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상 주식회사도 있지만 상호회사가 있기 때문임.
 -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법('20.11.20. 시행예정) 개정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5호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산업지원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기구를 대출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2호 『신용평가회사 대주주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관련 검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 관련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건 제3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 금융결제원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 (보고자)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관리하는 기관임. 기존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업체별 한도였음. 업체별 1,000만 원이런 식의 한도였는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업체의 투자한도를 총 합해서 3,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겼음. 그러다보니까 투자자의 모든 투자한도를 집중해서 관리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임.
 - (위원) 그것은 금융실명제와 관계가 없는지?
 - (보고자) 온투업체도 금융실명법은 당연히 적용되며 실명법 위반 이슈가 없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운영될 것임.

- (위원)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된 업체는 없는지?
- (보고자) 그러함. 서류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데 등록 접수해 서 공식적으로 시작한 업체는 아직 없음.
- (위원) 옥석을 잘 가려서 등록을 받아주시기 바람.
- ㅇ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건 제34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 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 『금융 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ㅇ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7분 폐회)